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주요 업무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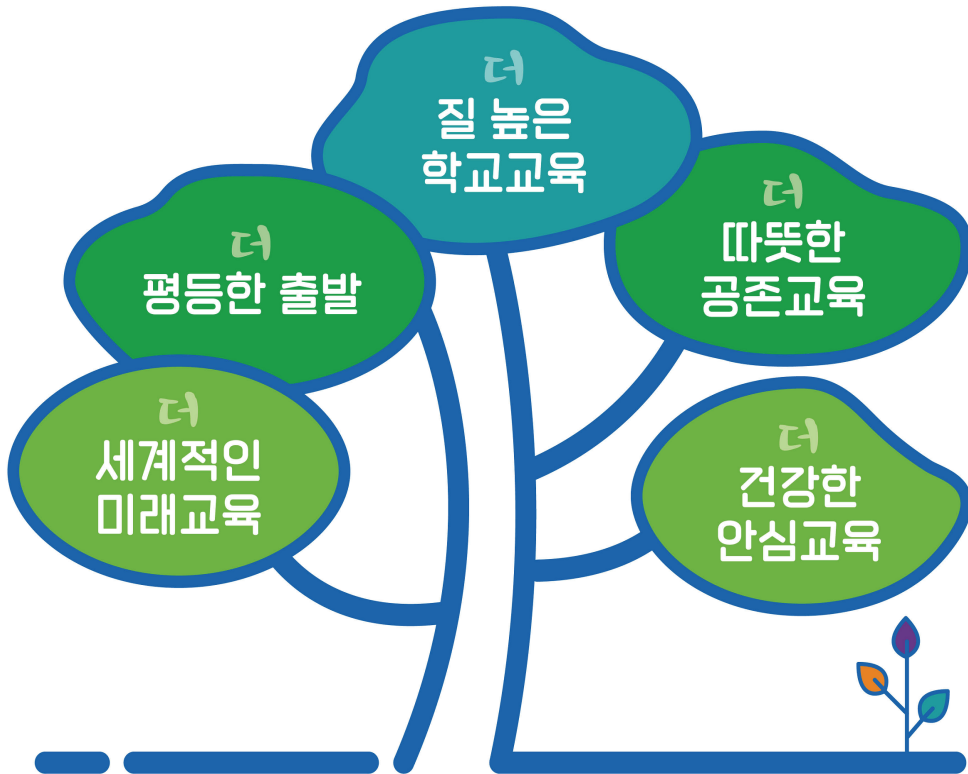
교육 지표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방향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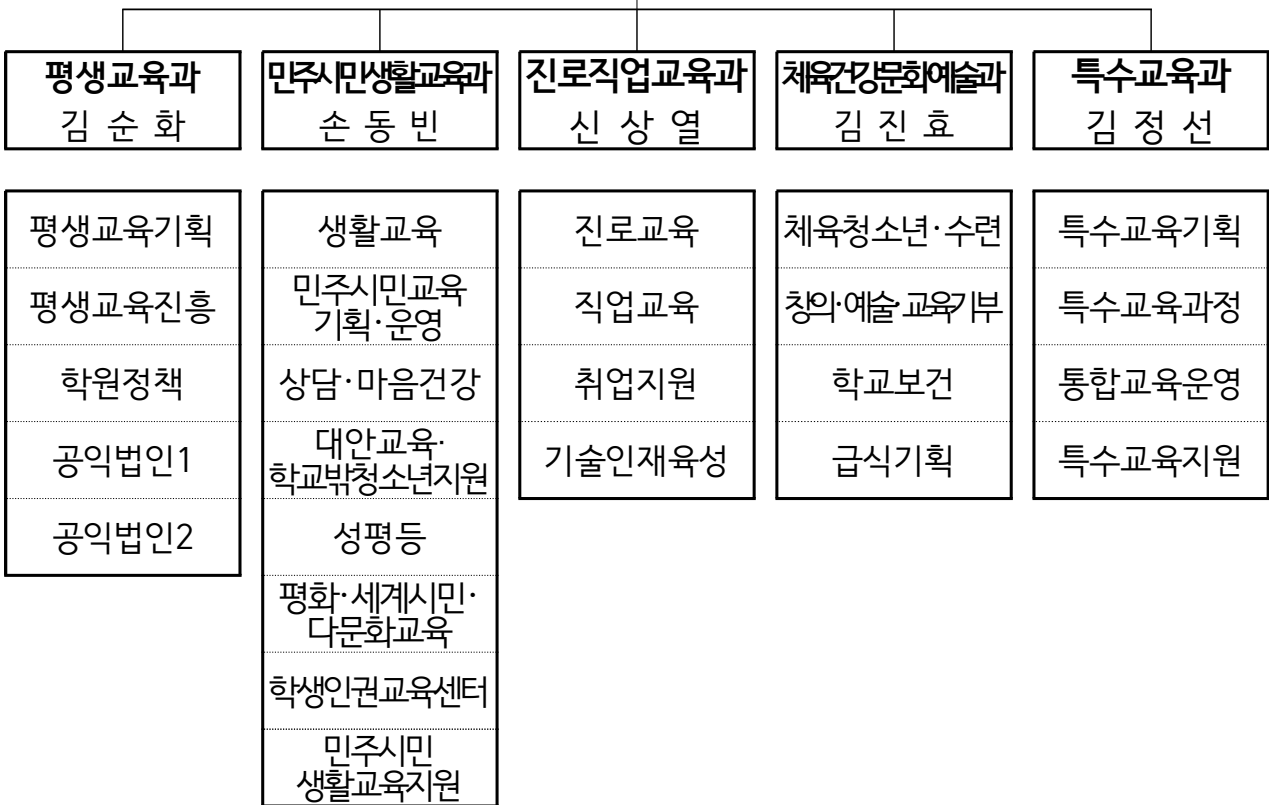


일반 현황

□ 조 직

5과 25담당

평생진로교육국 구 자 희



□ 정·현원

('22.9.1.기준)

| 구분 | 일 반 직 | | | | | | | | 교육전문직 | | | | 합계 |
|----|-------|----|----|----|----|----|----|----|-------|----|----|----|-----|
|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소계 | 유아 | 초등 | 중등 | 소계 | |
| 정원 | - | 3 | 10 | 29 | 42 | 9 | - | 93 | 1 | 20 | 47 | 68 | 161 |
| 현원 | - | 3 | 10 | 31 | 32 | 20 | - | 96 | 1 | 24 | 43 | 68 | 164 |

□ 주요 기능

| 구 분 | 담 당 업 무 |
|----------------------|---|
| 평 생 교 육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형태 평생교육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업무 지원 ○ 장애성인 및 학교평생교육 지원 ○ 초·중·고졸 검정고시 운영 ○ 도서관·평생학습관 발전지원 ○ 퇴직교직원 사회공헌 봉사활동 지원 ○ 학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
|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계회복 학교문화 조성 ○ 심리·정서 위기학생 상담 및 치유 종합지원 ○ 대안교육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조성 ○ 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평화·역사·통일교육 활성화 및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 탈북학생 및 다문화학생 지원 ○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원 |
| 진 로 직 업 교 육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산업수요에 적합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운영 |
| 체 육 건 강 문 화 예 술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 및 생존수영교육 관련 업무 ○ 학교예술교육 및 교육기부 업무 ○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 ○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 지원 및 급식시설 현대화 |
| 특수교육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운영 계획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 업무 ○ 현장중심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



예산 현황

2022년 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 '22.11.25.기준)

| 부서 | 세부사업 | 2022년도 | | 2021년도 |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 집행률 (C/B) |
|-----------------------|-----------------------|------------|------------|------------|--------------------|--------------|
| | | 본예산(A) | 예산현액(B) | 최종예산 | | |
| 민주 시민 생활 교육과 | 학생생활지도지원 | 1,479,605 | 1,903,633 | 1,992,517 | 1,800,169 | 94.6 |
| | 성폭력예방교육등 | 667,338 | 801,733 | 771,359 | 735,292 | 91.7 |
| | 학교폭력예방및교육 | 6,988,355 | 8,012,946 | 7,645,514 | 6,568,444 | 82.0 |
| | 학생상담활동 | 3,690,268 | 5,802,168 | 3,651,043 | 5,339,603 | 92.0 |
| | 대안교육운영 | 10,328,788 | 10,334,788 | 10,757,303 | 9,493,982 | 91.9 |
| |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 7,582,107 | 7,597,107 | 6,352,050 | 7,023,146 | 92.4 |
| | 학교보건관리 | 93,914 | 499,910 | 79,920 | 449,053 | 89.8 |
| | 기금전출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 |
| 합계 | | 31,830,375 | 35,952,285 | 32,249,706 | 32,409,689 | 90.1 |

2022년 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 '22.11.25.기준)

| 번호 | 과제명 | 2022 예산 | | | 2021 최종예산 | 집행액(B) (원인행위기준) | 집행률 (B/A) |
|----|-------------------------|-----------|---------|-----------|--------------|--------------------|--------------|
| | | 본예산 | 특교 등 | 계(A) | | | |
| 1 |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 | 696,170 | 346,280 | 1,042,450 | 923,430 | 909,625 | 87.3 |
| 2 |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 687,440 | - | 687,440 | 677,445 | 650,445 | 94.6 |
| 합계 | | 1,383,610 | 346,280 | 1,729,890 | 1,600,875 | 1,560,070 | 90.2 |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

1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목적

- 배움과 성장의 주체인 학생의 '삶의 변화'를 주도할 민주시민 역량 함양
- 학교교육과정(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내 민주시민교육 수업 역량 강화
- 민주시민성 기반 평화·통일·역사교육 활성화 및 교원 역량 강화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59조의4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조례('19.1.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22.1.6.)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19.5.16.)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19.7.18.)
-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안전기획관-1138, '22.1.5.)

○ 주요 내용

- 학생참여 선순환 체제*가 작동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학생참여 선순환 체제 학급회의→대의원회의('학생의회'기능)→학생회→학교장과의 간담회(분기별 1회 이상)의 순으로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학생참여 시스템

- 학교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실천 지원 확대
- 민주시민교육 연계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추진 목표

| 세부사업명 | 추진 시기 | 물량 |
|---------------------------------|-----------|--------------|
| 학생참여예산제 지원 | '22.3~12월 | 초·중·고 1,288교 |
|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교원단 운영 | '22.3~12월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
| 수업시간에 민주시민교육하기(수학, 과학) 실천교원단 운영 | '22.3~12월 | 5팀 |
| 제7회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실천팀 운영·지원 | '22.3~12월 | 35팀, 175명 |
| 2022 지방선거 프로젝트 학습자료 개발·보급 | '22.1월 | 관내 중학교 |
|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 포럼 실시 | '22.9월 | 1건, 300명 |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지원 | '22.3~12월 | 초·중·고 25교 |
| 평화·통일·역사교육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22.3~12월 | 9팀 |

추진 계획

'22 주요 개선 사항

- 사회현안 및 평화·통일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학습
 - 학교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실천 지원 확대
- 온·오프라인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 토의·토론 중심 학생자치 운영 지원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학생자치 네트워크 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 '22.3~12월
 -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지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및 포럼 운영
- 민주시민교육 기반 평화·통일·역사교육 활성화 및 교원 역량 강화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초·중·고 25교

- 체험 중심 평화·통일·역사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지원
 - ※ 평화·통일교육교사연구회(9팀), 현장지원단(1팀), 직무연수('22.10월), 워크숍 운영
- 학생자치활성화 '교복입은 민주시민 프로젝트'지속 운영: '22.3~12월
 - 학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여건 마련
 - ※ 학생회 운영비 지원: 초·중·고, 교당 1,000천원
 - ※ 학생참여예산제: 초·중·고 1,288교(초 교당 1,000천원, 중·고 교당 2,000천원)
 -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운영
 - ※ 학생네트워크(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 12단(본청 및 지원청)
 - ※ 초·중 학생자치 나눔 컨설팅단(핵심교원)확대 구성·운영: 22단(지원청)
 - ※ 학급임원교육 실시를 통한 학급자치역량 강화

□ 추진 실적

-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2022 지방선거 교육용 도서 보급: '22.5월(31교, 1,110권)
 -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159교
 -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컨설팅 교원단 운영: 11개 교육지원청, 43명
 - 「학교, 시민교육을 만나다」 제1~6기 연수 운영 (하반기, 150명)
 - 제7회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실천팀: 35팀, 175명
- 제6기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22.2월,7월
- 학교 민주시민교육 국제 포럼 개최('22.9월)
- 학교자율예산 교부를 통한 학생자치 기반 조성
 - 학생참여예산제 교부: 1,288교 (초·중·고·각종)
 - 학생회 운영비 학교 신청: 초·중·고, 교당 1,000천원
-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학생자치 나눔컨설팅단 구성 및 단위학교 컨설팅 실시: 73명, '22.5~12월
 - 학생네트워크(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12단, '22.5월

- 학급임원대상 퍼실리테이터 교육: 11개 교육지원청, '22.4~8월
- 토의·토론 기반 학생회 선거 길라잡이(중등) 개발 및 안내: '22.8월
- 초·중등 교원 대상 학생자치 직무연수 운영: '22.7~8월
- 민주시민성 기반 평화·통일·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초·중·고 25교(초13교, 중5교, 고7교)
 - 202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16명)
 - 통일교육주간 활성화지원, 교실로 온 평화통일 운영(87교)
 - 청소년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평화지킴이 운영(중·고 37명)
 - 2022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운영: 60팀(130명), '22.5~7월
 -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2.4~12월
 -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22.5월, 8월, 10월
 - 평화·통일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22.9~10월(40명)

□ 향후 추진 일정

- 학생참여예산제 우수사례집 발간: '22.11~'23.2월
-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 지원: '22.3~12월
- 평화·통일교육 핵심리더 연수 운영: '22.11월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2.11.25.기준)

| 사업명 | '22 예산 | | | '21 최종예산 | 집행액 및 집행률 | |
|-----------------------|----------------|----------------|------------------|----------------|---------------------------|---------------------------|
| | 본예산 | 추경, 특교 등 | 계 | | 원인행위액 (집행률) | 지출액 (집행률) |
| 역사교육 활성화지원 | 78,900 | - | 78,900 | 89,000 | 11,900 (15.1) | 11,900 (15.1) |
| 민주시민교육강화 | 227,600 | - | 227,600 | 233,060 | 165,256 (72.6) | 120,507 (52.9)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232,870 | - | 232,870 | 319,570 | 232,870 (100) | 232,870 (100) |
|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강화 | 20,400 | - | 20,400 | 25,400 | 20,400 (100) | 20,400 (100) |
| 민주시민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 94,000 | 346,280 | 440,280 | 204,000 | 265,502 (60.3) | 245,050 (55.7) |
|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추진 | 42,400 | - | 42,400 | 52,400 | 38,160 (90.0) | 27,400 (64.6) |
| 합계 | 696,170 | 346,280 | 1,042,450 | 923,430 | 734,088 (70.4) | 658,127 (63.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시행 2022. 1. 6.] [서울특별시조례 제8311호, 2022. 1. 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5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신설 2020.3.26.>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신설 2020.7.16>
7.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신설 2022.1.6.>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11호,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1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 사업 개요

- 목적
 - 탈북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제7021호, '19.3.28.)
- 주요 내용
 - 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추진 목표

| 세부사업명 | 추진 시기 | 물량 |
|--------------|--------------|------|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 '22.4~'23.2월 | 200팀 |

□ 추진 계획

'22 주요 개선 사항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속 지원 강화, 멘토교사 워크숍 실시
 -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통일전담교육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탈북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미래 통일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한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학교별 1:1 맞춤형 멘토링 운영(200팀) 및 멘토교원 워크숍 실시

- 탈북학생 학습멘토링 여름방학학교 운영: 1회
- 탈북학생 토요일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2교, 교당 40,000천원
- 남북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활동 지원: 5팀, 교당 2,000천원
-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탈북학생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 실시: 4교, 교당 5,000천원
 - 탈북학생 진로탐색 겨울방학학교 운영: 1회
-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 탈북학생 다수 재학 학교 지원: 9교, 교당 2,000~2,250천원
 - 북한이탈주민 등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연 11회

추진 실적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학교별 1:1 맞춤형 멘토링 운영: 37교, 165팀
 - 토요일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거점학교 2교(경서중, 노원중), 51팀(105명)
 - 학습멘토링 여름방학학교: 학생 및 교사 121명 참여('22.8.1.~8.5.)
 - 남북학생·학부모 연합 동아리 운영: 5팀, 교당 2,000천원
-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실시
 -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 실시: 4교, 교당 5,000천원
 - 진로탐색 겨울방학학교: 학생 및 교사 113명 참여('22.1.17.~1.21.)
-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 운영 지원: 9교, 교당 2,000천원~2,250천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10회, 북한이탈주민·다문화 학생·학교밖청소년 62명 학력 인정

향후 추진 일정

- 탈북학생 진로탐색 겨울방학학교 운영: '23.1월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2.11.25.기준)

| 사업명 | '22 예산 | | | '21 최종예산 | 집행액 및 집행률 | |
|----------------------|----------------|-------------|----------------|----------------|---------------------------|---------------------------|
| | 본예산 | 추경, 특교 등 | 계 | | 원인행위액 (집행률) | 지출액 (집행률) |
| 탈북학생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 658,400 | - | 658,400 | 648,000 | 621,405 (94.4) | 621,405 (94.4) |
| 북한이탈주민등 학력심의위원회 | 9,040 | - | 9,040 | 9,040 | 9,040 (100) | 9,040 (100) |
|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 지원 | 20,000 | - | 20,000 | 20,000 | 20,000 (100) | 20,000 (100) |
| 합계 | 687,440 | - | 687,440 | 677,040 | 650,445 (94.6) | 650,445 (94.6) |

2023년 통일안보교육 주요업무보고

1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단위학교 통일·안보교육 역량 강화
-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2019.5.16.)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연계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 학생 참여·체험 중심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주간 단위학교별 통일·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 운영 및 계기교육 실시

□ 추진 목표

| 세부사업명 | 추진시기 | 물량 |
|-----------------------|-------|------------|
|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 연중 | 10교 |
| 통일로 통하는 DMZ 미디어 아트 캠프 | 6~8월 | 중·고등학생 40명 |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 연중 | 9팀 |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연중 | 1교 |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 연중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
| 통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 4~12월 | 초·중등 2단 |

□ 추진 계획

-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 (목적) 교육과정 연계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및 미래 세대 통일안보역량 함양
 - (기간) 2023. 3월~12월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 10교
 - (내용) 학급 또는 팀 단위(동학년 또는 교과 간) 프로젝트 중심의 통일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참여중심 협력, 토의, 토론, 체험 등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실천 지원

- 통일로 통하는 DMZ 미디어 아트 캠프
 - (목적)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통일안보의지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 (기간) 2023. 6월 ~ 8월 (2박3일)
 - (장소) 분단 접경지역, 안보체험관, DMZ 박물관, 통일전망대 등
 - (대상) 중·고등학생 40명
 - (내용) 학생 참여 중심 현장체험학습과 강의, 토의·토론학습을 혼합하여 운영하며,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흥미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미디어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목적) 통일교육 공동 연구·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 (기간) 2023. 3월~12월
 - (대상) 초·중·고 교원 5~10명 내외 (2개교 이상으로 구성)
 - ※ 학교급별 혼합팀 구성 또는 동일 학교급 교원 간 구성
 - (내용) 교육과정 연계 학생 학교통일교육 수업안 및 학습자료 개발·적용, 학생 참여 체험형 통일·안보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목적) 서울통일관 관람 및 체험을 통한 통일·안보 의지 제고
 - (장소) 서서울생활과학고 내
 - (대상) 초·중·고 학생 , 교원 및 단체 등
 - (관람시간) 연중 운영, 평일(월~금) 09:00 ~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서서울생활과학고 홈페이지 접속→서울통일관→통일관안내
→관람신청서→서식다운 후 작성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 (목적) 학생 참여·체험 중심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
 - (기간) 2023. 3월 ~ 2024. 2월
 - (방법) 학교자율사업운영제
 - (대상)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 (내용)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통일신문 발간, 뉴스제작, 캠페인, UCC 제작·공유, 독서토론, 현장 체험, 체험부스 운영, 교내 행사와 연계한 통일·안보 홍보활동 등

예산 계획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2.11.25.)

| 사업명 | '23 예산 | | | '22 최종예산 | 세부사업명 |
|------------|---------------|---------------|---------------|----------------|-----------------|
| | 본예산 | 특교 등 | 계 | | |
| 프로젝트수업 지원 | - | 10,000 | 10,000 | 50,000 | 학교전인적교육활성화(특교) |
| DMZ미디어캠프 | 42,400 | - | 42,400 | 42,400 | 평화와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
| 교원전문성 제고 | - | - | - | 60,000 | |
| 교원학습공동체 | - | - | - | - | ※연구정보원 예산지원 |
| 통일교육 실천동아리 | - | - | - | -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
| 통일관 운영지원 | 5,000 | - | 5,000 | 5,000 | 화해와평화로가는 통일교육강화 |
| 통일교육 현장지원단 | 15,400 | - | 15,400 | 15,400 | 화해와평화로가는 통일교육강화 |
| 합계 | 62,800 | 10,000 | 72,800 | 172,800 | |

□ 기금 개요

- 설치목적
 -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요 자금의 적립·조성
- 설치근거
 -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683호(2020.9.24. 일부 개정)
- 기금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 2023년 기금 사업 개요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학생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 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교구, 비품, 교육복지 등 인도적 지원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 추진 목표

| 세부사업명 | 추진시기 | 물량 |
|---------------------------|------|---------------|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연중 | 1단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중 | 1단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운영 | 연중 | 연 1,000,000천원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연중 |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 기금명 | '22년도말 조성액(a)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 '23년도말 조성액 (d=a+b-c) | 융자금 미회수채권 (e) | 총규모 (f=d+e) |
|----------------|------------------|--------------|---------|----------------------------|---------------------|----------------|
|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 |
| 남북교육 교류협력기금 | 2,795,792 | 1,032,570 | 830,000 | 2,998,362 | - | 2,998,362 |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 기금명 | '22년도 말 조성액(a)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 '23년도 말 조성액(e) (d=a+b-c) | 비고 |
|--------------|-------------------|--------------|---------|--------------------------------|----|
|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
| 합 계 | 2,795,792 | 1,032,570 | 830,000 | 2,998,362 | |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775,470 | 1,000,000 | 830,000 | 2,945,470 | |
|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 20,322 | 32,570 | - | 52,892 |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 자산구분 | '21년말 잔액 | '22년 계획 | | | '23년 계획안 | | | 증감 (b-a) |
|------|-------------|-----------|---------|-----------|-----------|---------|-----------|-------------|
| | | 신규 | 처분 | 잔액(a) | 신규 | 처분 | 잔액(b) | |
| 합 계 | 1,935,470 | 2,955,792 | 160,000 | 2,795,792 | 3,828,362 | 830,000 | 2,998,362 | 202,570 |
| 금융자산 | 1,935,470 | 2,955,792 | 160,000 | 2,795,792 | 3,828,362 | 830,000 | 2,998,362 | 202,570 |
| 예치금 | 1,935,470 | 2,955,792 | 160,000 | 2,795,792 | 3,828,362 | 830,000 | 2,998,362 | 202,570 |

□ 자금운용 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 수입계획 | | | | 지출계획 | | | |
|-------------|-------------|-------------|---------|--------------|-------------|-------------|---------|
| 수입항목 | '23년 수입액 | '22년 수입액 | 증감 | 지출항목 | '23년 지출액 | '22년 지출액 | 증감 |
| 합 계 | 3,828,362 | 2,955,792 | 872,570 | 합 계 | 3,828,362 | 2,955,792 | 872,570 |
| 교특회계 전입금 | 1,000,000 | 1,000,000 | - | 비용자성 사업비 | 827,600 | 157,600 | 670,000 |
| 기부금 | - | - | - | 용자성 사업비 | - | - | - |
| 용자금 회수 | - | - | - | 인력 운영비 | - | - | - |
| 예치금 회수 | 2,795,792 | 1,935,470 | 860,322 | 예치금 | 2,998,362 | 2,795,792 | 202,570 |
| 예탁금 원금회수 | - | - | - | 예탁금 | - | - | - |
| 예수금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이자수입 | 32,570 | 20,322 | 12,248 | 기본경비 | 2,400 | 2,400 | - |
| 기타 | - | - | - | 기타 | - | - | -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 수입과목 | | | | 산출기초 | '23년 수입액(A) | '22년 수입액(B) | 증감 (A-B) |
|-------------|---|-----------------------|---|-------------------|----------------|----------------|-------------|
| 장 | 관 | 항 | 목 | | | | |
| 내부거래(50000) | | | | | 1,000,000 | 1,000,000 | - |
| | | 전입금(51000) | | | 1,000,000 | 1,000,000 | - |
| | | 전입금(51100) | | | 1,000,000 | 1,000,000 | - |
| |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1102) | | 1,000,000,000원×1식 | 1,000,000 | 1,000,000 | - |
| 자체수입(20000) | | | | | 32,570 | 20,322 | 12,248 |
| | | 이자수입(24000) | | | 32,570 | 20,322 | 12,248 |
| | | 이자수입(24100) | | | 32,570 | 20,322 | 12,248 |
| | | 예금이자수입(24101) | | 32,570,000원×1식 | 32,570 | 20,322 | 12,248 |
| 기타(40000) | | | | | 2,795,792 | 1,935,470 | 860,322 |
| | | 예치금회수(42000) | | | 2,795,792 | 1,935,470 | 860,322 |
| | | 예치금회수(42100) | | | 2,795,792 | 1,935,470 | 860,322 |
| | | 예치금회수(42101) | | 2,795,792,000×1식 | 2,795,792 | 1,935,470 | 860,322 |
| 수입합계 | | | | | 3,828,362 | 2,955,792 | 872,570 |

○ 지출계획

[분야] 교육

(단위 : 천원)

| 지출계획 | | | | 사업내역 | 목 | 산출기초 | '23년 지출액 (A) | '22년 지출액 (B) | 증감 (A-B) | | |
|--------------|--------|--------|--------|------|---|------|--------------------|--|-------------|-----------|---------|
| 부 문 | 정 책 | 단 위 | 세 부 | | | | | | |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827,600 | 157,600 | 670,000 | | |
| 교수-학습활동지원 | | | | | | | 827,600 | 157,600 | 670,000 | | |
| 학생생활지도 | | | | | | | 827,600 | 157,600 | 670,000 | | |
| 학생생활지도지원 | | | | | | | 827,600 | 157,600 | 670,000 | |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 | | | | | 827,600 | 157,600 | 670,000 | | |
| 평화·통일 역사 탐방 | | | | | | | 210-13 | 75,000,000원×2회 | 150,000 | - | 150,000 |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 | | | | | | 210-13 | 100,000,000원×2회 | 200,000 | - | 200,000 |
|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 | | | | | | 320-01 | 100,000,000원×2회 | 200,000 | - | 200,000 |
| 환경조성사업 | | | | | | | 210-13 | 80,000,000원×1회 80,000,000원×1회 40,000,000원×1회 20,000,000원×1회 30,000,000원×1회 | 250,000 | 140,000 | 110,000 |
| 운영수당 | | | | | | | 210-06 | (1000,000원+50,000원)×10명 ×2회+(60000원×10명×11회) | 9,600 | 9,600 | - |
| 일반수용비(행사운영비) | | | | | | | 210-01 | 5,000,000원×2회 500,000원×10회 | 15,000 | 7,000 | 8,000 |
| 업무추진비 | | | | | | | 230-02 | 30,000원×10명×10회 | 3,000 | 1,000 | 2,000 |
| 교육일반 | | | | | | | | 2,400 | 2,400 | - | |
| 기관운영 | | | | | | | | 2,400 | 2,400 | - | |
| 기본운영비 | | | | | | | | 2,400 | 2,400 | - | |
| 기관기본운영비 | | | | | | | | 2,400 | 2,400 | - | |
| 위원회운영 | | | | | | | | 2,400 | 2,400 | - | |
| 위원회운영 | | | | | | | 210-06 | (1000,000원×12명)×2회 | 2,400 | 2,400 | - |
| 재무활동 | | | | | | | | 2,998,362 | 2,795,792 | 202,570 | |
| 예치금 | | | | | | | | 2,998,362 | 2,795,792 | 202,570 | |
| 예치금 | | | | | | | | 2,998,362 | 2,795,792 | 202,570 | |
| 예치금 | | | | | | | 520-01 | 2,998,362,000원×1식 | 2,998,362 | 2,795,792 | 202,570 |
| 지출합계 | | | | | | | | 3,828,362 | 2,955,792 | 872,570 |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세부사업 계획(안)

□ 사업개요

- 기간: 2023. 1. ~ 2023. 12.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0.9.24. 제7683호)
- 목적: 남북교육교류협력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평화통일기반 조성

□ 사업내용

(단위: 천원)

| 구분 | '23년 지출계획 | 집행액 | 지원 범위 |
|--------------------|--|----------------|--------------------------------------|
| 역사 탐방 |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 150,000 | 사전(후) 운영비, 탐방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등 |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 · 남북학생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 학생 교사 북한 교육기관 방문, 자매결연 교육교류 등 | 200,000 | 교육교류를 위한 사전(후) 운영비, 인건비, 여비 등 |
|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 · 교육교류를 통한 교구·교재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 ·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 200,000 | 교육지원(교구, 교재, 비품, 교육복지 등)에 관계된 현물구입 등 |
| 환경조성사업 | · 통일캠프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 통일교육주간 현장안보체험 프로그램 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 교원 통일 안보역량강화 사업 추진 | 250,000 | 환경조성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심사비, 인건비, 물품 구입 등 |
|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공통 예산 | | 27,600 | 행사용품, 수당 등 |
| ※ 기본운영비 | | 2,400 | 위원회 수당 |
| 합계 | | 830,000 | |

·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사업 특성상 지원 계획 및 지원 범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집행계획

○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 기금명 | '21년도 말 조성액(a)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 '22년도 말 조성액(e) (d=a+b-c) | 용자금 미회수채권 (e) | 총규모 (f=d+e) |
|------------|----------------|--------------|---------|-----------------------------|---------------|-------------|
| | | 조성계획(b) | 집행계획(c) | | |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2,795,792 | 1,032,570 | 830,000 | 2,998,362 | - | 2,998,362 |

○ 집행계획(c)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사업 세부 내역 | 산출 기초 | 집행액 |
|----------------|--|---------|
| 평화·통일 역사 탐방 | 75,000,000원×2회 | 150,000 |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 100,000,000원×2회 | 200,000 |
|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 100,000,000원×2회 | 200,000 |
| 환경조성사업 | 80,000,000원×1회, 80,000,000원×1회 40,000,000원×1회, 20,000,000원×1회 30,000,000원×1회 | 250,000 |
| 운영수당 | (1000,000원+50,000원)×10명×2회 +(60000원×10명×11회) | 9,600 |
| 일반수용비(행사운영비) | 5,000,000원×2회, 500,000원×10회 | 15,000 |
| 업무추진비 | 30,000원×10명×10회 | 3,000 |
| [기본운영비]위원회운영수당 | (100,000원×12명)×2회 | 2,400 |
| 합계 | | 830,000 |

□ 주요사업 세부 추진 계획

| 사업명 | 평화 · 통일 역사유적 탐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탐방을 통한 역사, 갈등 이해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 방향 모색 ·교사와 학생들 간 통일 필요성 인식 및 통일안보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소속 교사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역사유적 현장탐방활동을 위한 사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통일교육 관련 역사유적 체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자율성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추진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평화를 향하여 우리가 만드는 통일 발자국 ·(일정) 2022년 7~8월 중 5~7일 ·(장소) 국내, 독일, 중국, 베트남, UN 등 ·(대상)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고등학생 40~50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관내 교사 대상(개인 또는 팀단위) 통일교육 실천계획, 전년도 활동 경력을 포함한 통일기행 프로그램 계획을 공모하여 활동내용 및 프로그램이 우수한 팀을 선정 후, 선정 공모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 - 학생: 관내 고등학생 중 교내외 평화통일교육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선정 후 선정된 학생들이 기획하는 통일기행 추진 (※사전실무협의체 협의에 의해 장소, 대상 인원, 일정, 선발 방법 등 변경 가능) ·추진 일정(안) <table border="1" data-bbox="406 1305 1430 1641"> <thead> <tr> <th>순</th> <th>일정</th> <th>추진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23. 1.</td> <td>사전실무협의체 구성</td> </tr> <tr> <td>2</td> <td>2023. 2.</td> <td>공모 계획 수립</td> </tr> <tr> <td>3</td> <td>2023. 3.</td> <td>공모신청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수합</td> </tr> <tr> <td>4</td> <td>2023. 4.</td> <td>심사 및 선정</td> </tr> <tr> <td>5</td> <td>2023. 4. ~ 7.</td> <td>선정팀 대상 사전 프로슈머 연수 운영</td> </tr> <tr> <td>6</td> <td>2023. 7. ~ 8.</td> <td>현장 탐방</td> </tr> <tr> <td>7</td> <td>2023. 9.</td> <td>사후평가회 및 통일교육 사례 공유</td> </tr> </tbody> </table>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통일·안보공감대 확산 - 현장 탐방을 통한 남북관계 및 분단의 역사적 배경 이해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교육교류 추진 방향 모색 | 순 | 일정 | 추진내용 | 1 | 2023. 1. | 사전실무협의체 구성 | 2 | 2023. 2. | 공모 계획 수립 | 3 | 2023. 3. | 공모신청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수합 | 4 | 2023. 4. | 심사 및 선정 | 5 | 2023. 4. ~ 7. | 선정팀 대상 사전 프로슈머 연수 운영 | 6 | 2023. 7. ~ 8. | 현장 탐방 | 7 | 2023. 9. | 사후평가회 및 통일교육 사례 공유 |
| 순 | 일정 | 추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23. 1. | 사전실무협의체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023. 2. | 공모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23. 3. | 공모신청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수합 | | | | | | | | | | | | | | | | | | | | | | | |
| 4 | 2023. 4. | 심사 및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023. 4. ~ 7. | 선정팀 대상 사전 프로슈머 연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023. 7. ~ 8. | 현장 탐방 | | | | | | | | | | | | | | | | | | | | | | | |
| 7 | 2023. 9. | 사후평가회 및 통일교육 사례 공유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 |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
|-----------------|---|
| 방향 및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유관 기관의 협조와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 채널을 통해 교류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 사업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단체 사업 제안 검토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북측과의 협의 및 합의 정도 심사를 통한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부처(통일부)의 협의를 통한 기금 집행 타당성 검토 및 사전 승인 필요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총액에 대해 증액 편성 가능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 소재 비영리 법인, 관련 단체 |
| 연계·협력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청소년 음악제, 오케스트라단 상호 초청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 - 체육회 및 유관기관 협력 다양한 스포츠 분야 교류 - 남북 성인 스포츠 교류 재개 시 학생 스포츠 교류 검토 ※ 남북정세에 따라 남북 학생 참가 시 서울 학생 중심으로 운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남북 공통의 공휴일 또는 기념일 (광복절, 추석, 설날 등) (예정) ○ (장소) 서울, 판문점 등 ○ (핵심 활동) 학생 중심 예술문화 공연, 남-북 시, 글, 그림 감상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참가 교육, 교수법 혁신 등 미래교육 분야 학술회의 - 북측 교육전문가 및 교육당국과 연계한 남북제3국 활용 학술회의 - 남북 교육 교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
| 예산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 사업명 |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 |
|----------|--|
| 방향 및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유관 기관의 협조와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 채널을 통해 교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한 신뢰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 계기 마련 |
| 사업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단체 사업 제안 검토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 관계부처(통일부)의 협의를 통한 기금 집행 타당성 검토 및 사전 승인 필요 ·교육교류를 통한 교구·교재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
| 연계·협력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학교, 학생 등 교육분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하반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남북정세 고려하여 추진) - (방법)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가능한 단체와 협력 - (지원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교육교류를 위한 교구 및 교재 등 (2차) 학생 의식주, 보건, 건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 (예산) 물품구입비, 운송비, 운영경비(위탁비) 포함 - (사업추진 방식) 민간위탁 관련 업무 협약 후 사업 위탁비 교부 및 정산 |
| 예산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 사업명 | 환경조성 사업 |
|----------------|--|
| 방향 및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교육협력 사업 공감대 형성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통일·안보체험활동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학교급별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 |
| 사업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내 통일·안보교육 사업추진 ·통일교육주간 축제, 찾아가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 통일캠프 , 교원 통일안보 역량강화 사업 추진 |
| 세부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캠프 운영(8,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 내용: 국내 현장 탐방 및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안보의지 제고 - 방법: 가족캠프(200명), 사제동행 캠프(60명) - 시기: 가족캠프 (5월 당일 2회 실시), 사제동행(7월말 1박2일) ·통일교육주간 통일안보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통일 축제 (8,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학급별) (70~80교) - 내용: 통일안보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통일·안보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역량 키우기(버스, 가이드 일체 현장체험학습 지원) - 방법: 학급별 참가,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활동 지원 - 시기: 2023년 연중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주~10월) ·찾아가는 미래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4,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 40학급 - 내용: 학생들이 분단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안보역량을 갖춘 통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방법: 강연, 토론회, 현장탐방 요청을 학급, 학교별로 신청받아 프로그램 지원 - 시기: 2023년 상반기 대상 선정 후 연간 운영 ·교원 통일·안보 역량강화 연수 운영(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 관내 교원 40명 - 내용: 온오프라인 강의, 현장탐방을 통한 역량 강화 - 시기: 2023년 9~11월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리더 통일·안보 역량강화(3,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통일업무 담당 교사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 내용: 참관활동, 토의·토론,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통일안보 역량 함양 - 시기: 2023년 상하반기 2회 |
| 예산 | <p>금250,000천원(금이억오천만원)</p> |



참고자료2.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24.] [서울특별시조례 제7683호, 2020. 9.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자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자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9.24>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제16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지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683호, 202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022년 통일안보교육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단위학교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2019.5.16.)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연계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 학생 참여·체험 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워크숍 운영 지원

□ 추진 목표

| 세부사업명 | 추진시기 | 물량 |
|--------------------|------|------|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 연중 | 25교 |
| 함께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 5~7월 | 2회 |
| 평화통일교육 교원전문성 제고 | 연중 | |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 연중 | 9팀 |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 연중 | 1교 |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연중 | 1교 |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 연중 | 115교 |

□ 추진 계획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 (목적)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및 미래세대 통일역량 함양
 - (기간) 2022. 3월~12월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
 - (내용) 학급 또는 팀 단위(동학년 또는 교과 간) 프로젝트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참여중심 협력, 토의, 토론, 체험 등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실천 지원

-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 (목적) 학생 참여·활동 중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미래세대 평화·통일 인식 개선 및 관심 확장
 - (기간) 2022. 5월, 7월
 - (장소) 강화도, 강원도 고성
 - (대상) 초등: 학생, 학부모(가족동행) 중등: 학생, 교원(사제동행)
 - (내용) 교원·학생·가족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으로, 남북접경 지역 방문,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탐방 등을 통해 통일공감대 조성

- 평화통일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
 - (목적)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 (기간) 2022. 3월 ~ 12월
 - (대상) 초·중등 교원
 - (내용)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지원 워크숍,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목적) 평화통일교육 공동 연구·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 (기간) 2022. 3월~12월
 - (대상) 초·중·고 교원 5~10명 내외 (2개교 이상으로 구성)
 - ※ 학교급별 혼합팀 구성 또는 동일 학교급 교원 간 구성
 - (내용) 교육과정 연계 학생 평화·통일교육 수업안 및 학습자료 개발·적용, 학생 참여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목적)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통일교육 실천 모델 제시
 - (기간) 2021. 3월 ~ 2023. 2월
 - (대상) 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 (내용)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통일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목적) 서울통일관 관람 및 체험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장소) 서서울생활과학고 내
 - (대상) 초·중·고 학생, 교원 및 단체 등
 - (관람시간) 연중 운영, 평일(월~금) 09:00 ~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서서울생활과학고 홈페이지 접속→서울통일관→통일관안내
→관람신청서→서식다운 후 작성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 (목적) 학생 참여·체험 중심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
 - (기간) 2022. 3월 ~ 2023. 2월
 - (방법) 학교자율사업운영제

- (대상)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 (내용)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신문 발간, 뉴스제작, 캠페인, UCC 제작·공유, 독서토론, 현장 체험, 체험부스 운영, 교내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

□ 추진 실적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25교 선정(초13교, 중5교, 고7교)
 - 교당 2,000천원 지원, 총 50,000천원
- 함께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 초등: 가족동행 캠프 50팀 100명(5.27.(금), 5.28(토) 각 25팀씩)
 - 중등: 사제동행 캠프 10팀 20명(7.22.(금) ~7.23(토) 1박2일)
- 평화통일교육 교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원 40명 15시간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9팀(학교급, 학교간 혼합 구성)
 - 교당 1,460천원 지원, 총 13,140천원(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지원)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중1교
 - 교당 18,000천원 내외 지원(통일부 지원)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2020년(30,000천원) → 2021년(5,000천원) → 2022년(5,000천원)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운영 지원
 - 초11교, 중54교, 고50교 총 115교
 -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500천원~ 9,000천원)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22년 11. 10.(목) 온곡중학교

□ 향후 추진 일정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성과 및 사례 공유 : '22년 12월
- 통일교육 운영사례집 제작 배포: '22년 12월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2.11.25.)

| 사업명 | '22 예산 | | | '21 최종예산 | 집행액 및 집행률 | | 비고 |
|-----------------|--------|---------|---------|----------|-------------------|-------------------|-----------------|
| | 본예산 | 특교 등 | 계 | | 원인행위액 (집행률) | 지출액 (집행률) | |
| 프로젝트수업 실천 지원 | - | 50,000 | 50,000 | 30,000 | 50,000 (100) | 50,000 (100) | |
| 평화캠프 | 42,400 | - | 42,400 | 52,400 | 38,160 (90.0) | 38,160 (90.0) | |
| 교원 전문성제고 | - | 60,000 | 60,000 | 55,000 | 44,232 (73.7) | 38,266 (63.8) | |
| 교원학습공동체 | - | - | - | - | - | - | ※연구정보원 예산 지원 |
| 연구학교 선정·지원 | - | - | - | - | - | - | ※통일부 예산 지원 |
| 통일관 운영지원 | 5,000 | | 5,000 | 5,000 | 5,000 (100) | 5,000 (100) | |
| 동아리운영 지원 | 15,400 | - | 15,400 | 20,400 | 15,400 (100) | 15,400 (100) | ※통일교육 협의체 |
| | 62,800 | 110,000 | 172,800 | 162,800 | 152,792 (88.4) | 146,826 (85.0) | |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및 운용

기금 개요

- 설치목적
 -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요 자금의 적립·조성
- 설치근거
 -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683호(2020.9.24. 일부 개정)
- 기금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 기금의 용도
 -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분야 교류 협력, 인도적 교육지원, 학생 상호 간의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추진 목표

| 세부사업명 | 추진시기 | 물량 |
|---------------------------|------|---------------|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연중 | 1단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중 | 1단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 | 연중 | 연 1,000,000천원 |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연중 | |

□ 추진 계획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당연직(부교육감, 국장) 포함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
- (임기) 2년(당연직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역할) 남북교육교류협력 및 기반 조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심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사항 심의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당연직(부교육감, 국장) 포함 위촉직 위원 7명
- (임기) 2년(당연직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역할)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 (목적) 교육·학예분야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 추진
- (용도) 협력사업 필요 자금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지출
-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법인, 단체, 개인
- (조성) 연 10억원(2020년 최초 설치)
- (존속기한) 기금설치일로부터 5년 (존속기한 2025.9.23.)
- (운용)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목적) 지속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 공동 번영, 평화통일 선도
-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법인, 단체, 개인 및 우리청 소속 초·중·고 학생 및 교원
- (주요내용)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학생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 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교구, 비품, 교육복지 등 인도적 지원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 추진 실적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총 14명
- (운영) 회의 및 위촉식 개최: '22. 5월, 8월, 10월 (3회)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총 7명
- (운영) 회의 및 위촉식 개최: '22. 5월, 8월, 10월(3회)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사업 추진

■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교실로 온 평화통일’

- (목적) 학교의 자발적인 통일교육주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기간) 2022.5.23.(월) ~ 7.22.(금)
- (대상) 서울시 관내 초·중·고 희망교 87교
- (내용)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 주) 전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통일’, ‘평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또는 활동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도서와 교구를 지원 후 사례 공유

■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2022 우리는 평화지킴이’

- (목적)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인식 개선 및 관심 확장
- (기간) 2022. 4. ~ 10. (주말 11회 운영)
- (대상)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생 중 희망학생 36명
- (내용)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참여활동 중심, 강의, 연구, 토의, 토론, 정책 제안, 현장 탐방 등을 연간 계획에 의하여 운영

■ 2022 통일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 (목적) 현장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연수 확대로 초·중등교원의 건전한 통일관 및 국가관 확립, 통일교육 역량 강화
- (기간) 2022. 11. 25.(금) ~ 11. 26.(토)
- (대상) 통일동아리,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교원, 프로젝트수업 운영 교사, 통일교육 업무담당자 등 25명
- (내용) 통일 관련 현장 체험을 통한 남북 분단 현실 인식 및 통일 안보 의지 제고, 통일교육 사례, 수업개선 방법 공유

□ 향후 추진 일정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시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2.11.25.)

| 사업명 | '22 예산 | | '21 최종예산 | 집행액 및 집행률 | | 비고 |
|--------------------------|------------------|------------------|------------------|-----------------------------|-----------------------------|----|
| | 기금예산 | 계 | | 원인행위액 (집행률) | 지출액 (집행률) | |
|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역사탐방) | 150,000 | 150,000 | - | - | - | |
|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교류협력) | 250,000 | 250,000 | - | - | - | |
|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교육지원) | 250,000 | 250,000 | - | - | - | |
|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환경조성) | 250,000 | 250,000 | 69,400 | 121,259 (48.5) | 98,940 (39.6) | |
|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운영비) | 29,600 | 29,600 | 8,600 | 14,713 (49.7) | 14,383 (48.6) | |
|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업무추진비) | 4,000 | 4,000 | 2,000 | 600 (15.0) | 600 (15.0) | |
| 기관기본운영비 (위원회운영) | 2,400 | 2,400 | - | 800 (33.3) | 800 (33.3) | |
| 내부유보금 (예치금) | 1,997,787 | 1,997,787 | 1,922,317 | 1,997,572 (99.9) | 1,997,572 (99.9) | |
| 계 | 2,933,787 | 2,933,787 | 2,002,317 | 2,134,944 (72.8) | 2,112,295 (72.0) | |



참고자료 3.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현황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 총 1교

| 연번 | 종류 | 연구영역 | 연구과제 | 소속청 | 학교명 | 연차 |
|----|----|------|----------------------------|-----|-----|-----|
| 1 | 시범 | 통일교육 |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통일교육 실천 모델 개발 | 북부 | 온곡중 | 2/2 |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 구분 | 2020 | 2021 | 2022 |
|-----|----------|---------|---------|
| 지원액 | 30,000천원 | 5,000천원 | 5,000천원 |

○ 학생통일체험프로그램(학생체험동아리) 운영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 구분 | 2020 | 2021 | 2022 |
|-----|------|------|-------------|
| 학교수 | 30교 | 50교 |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

○ 평화·통일교육활동(프로젝트 수업 실천)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 구분 | 2020 | 2021 | 2022 |
|-----|------|------|------|
| 학교수 | 30교 | 20교 | 25교 |

- 2022학년도 운영·지원 현황

| 구분 | 학교수 | 해당학교명 |
|----|-----|---|
| 초 | 13교 | 대치초, 서일초, 강빛초, 풍성초, 장수초, 영등포초, 상현초, 불암초, 상원초, 선곡초, 신계초, 신방학초, 흥연초 |
| 중 | 5교 | 방산중, 신서중, 세화여중, 마포중, 대원국제중 |
| 고 | 7교 | 금호고, 선사고, 대원여고, 성남고, 염광고, 진명여고, 충암고 |